

---

#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

---

## < 일러두기 >

- 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는 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」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등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
-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유권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『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』를 설치·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 위원회로 연락(전화번호 : 1390)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## 목 차

<b>I. 학생(18세)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 Q&amp;A</b> .....	<b>1</b>
<b>①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&amp;A</b> .....	<b>1</b>
(1) 투표할 수 있는 나이 .....	1
(2) 선거운동이란? .....	1
(3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.....	1
(4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.....	2
(5) 말로 하는 선거운동 .....	2
(6)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.....	2
(7)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.....	2
(8)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.....	3
(9)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.....	3
(10) 페이스북·유튜브·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.....	3
(11)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.....	3
(12) 투표 인증샷 촬영 ① .....	4
(13) 투표 인증샷 촬영 ② .....	4
<b>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&amp;A</b> .....	<b>4</b>
(1)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.....	4
(2)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.....	4
(3)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.....	5
(4) 현수막·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.....	5
(5)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.....	5
(6)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.....	5
(7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.....	6
(8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.....	6
(9)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.....	6
(10)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.....	6
(11) 정당·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.....	7
(12)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.....	7
(13)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.....	7
(14)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.....	7
(15)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.....	8
(16)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.....	8
(17)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.....	8

## 목 차

<b>II. 교원·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mp;A</b> .....	<b>9</b>
(1)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·반대 .....	9
(2)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.....	9
(3)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.....	10
(4)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.....	10
(5) (예비)후보자 업적 홍보 .....	10
(6)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.....	10
(7)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.....	11
(8)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.....	11
(9) 특정 정당의 지지·반대 행위 .....	11
(10) 정당 등 지지도 조사 .....	12
(11) 투표한 정당 조사 .....	12
(12) 당원 가입·후원금 기부 권유 등 .....	12
(13)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·토론회 개최 .....	12
<b>III. 정당·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mp;A</b> .....	<b>13</b>
(1)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.....	13
(2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① .....	13
(3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② .....	13
(4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.....	13
(5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.....	13
(6)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.....	14

# I

## 학생(18세)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 Q&A

### 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 & A

#### (1) 투표할 수 있는 나이

<b>Q</b>	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?
<b>A</b>	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,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.

#### (2) 선거운동이란?

<b>Q</b>	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,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.
<b>A</b>	<p>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,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(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,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.)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,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,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.</p> <p>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, 홍보 인쇄물을 나눠 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(전화번호 : 1390)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
#### (3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

<b>Q</b>	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. 『공직선거법』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,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?
<b>A</b>	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,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#### (4)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

<b>Q</b>	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,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.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?
<b>A</b>	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.

#### (5) 말로 하는 선거운동

<b>Q</b>	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,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가능한지요?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?
<b>A</b>	질문과 같이 선거운동기간(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)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(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). 다만,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#### (6)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

<b>Q</b>	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,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?
<b>A</b>	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,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#### (7)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

<b>Q</b>	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.
<b>A</b>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(선거일 포함)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,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(8)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

<b>Q</b>	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인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 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?
<b>A</b>	만 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 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『공직 선거법』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## (9)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

<b>Q</b>	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'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'고 권유할 생각입니다.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?
<b>A</b>	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(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)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(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). 다만,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## (10) 페이스북·유튜브·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

<b>Q</b>	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,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,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.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?
<b>A</b>	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, 카카오톡,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(선거일 포함)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(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).

## (11)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

<b>Q</b>	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, OO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. OO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, 이를 리트윗 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. 괜찮나요?
<b>A</b>	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항상(선거일 포함)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(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).

## (12) 투표 인증샷 촬영 ①

<b>Q</b>	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,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?
<b>A</b>	투표소 내 인증샷(엄지손가락, V자 표시 등)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다만,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## (13) 투표 인증샷 촬영 ②

<b>Q</b>	(사전)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(퍼나르기)할 수 있나요?
<b>A</b>	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(엄지손가락, V자 표시 등)을 촬영하여 카카오톡,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
## 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&A

### (1)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

<b>Q</b>	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.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넘어갔는데,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,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?
<b>A</b>	친구에게는 어느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.

### (2)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

<b>Q</b>	평소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쉬는 시간,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,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<b>A</b>	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3)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

<b>Q</b>	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.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(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)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,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.
<b>A</b>	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·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(4) 현수막·배지를 사용하는 행위

<b>Q</b>	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'교육은 OO후보자에게!'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,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○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특정 정당·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.

(5)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

<b>Q</b>	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, OO당의 명칭·로고나 기호○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<b>A</b>	특정 정당의 명칭·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.

(6)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

<b>Q</b>	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.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.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

(7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

<b>Q</b>	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'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.' 또는 'OO 동아리 대표(회장)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.'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'OO 동아리' 또는 'OO동아리 대표(회장) OOO'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8)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

<b>Q</b>	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.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'OO 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.'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. 가능한지요?
<b>A</b>	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(회장)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(9)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

<b>Q</b>	전부터 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,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 하었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.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?
<b>A</b>	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(10)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

<b>Q</b>	같은 반 친구가 '게임 아이템 주겠다.'라고 하면서 '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.'라고 하는데,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?
<b>A</b>	정당·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.

(11) 정당·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

<b>Q</b>	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,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?
<b>A</b>	정당·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
(12)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

<b>Q</b>	SNS를 이용하여 "○○후보자가 당선되면 □□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.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. 100명 선착순으로 꼭지 주세요."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,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?
<b>A</b>	정당·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,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,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.

(13)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

<b>Q</b>	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·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, 괜찮나요?
<b>A</b>	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(14)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

<b>Q</b>	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,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. 받아도 되는 건가요?
<b>A</b>	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,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.

(15)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

<b>Q</b>	제가 사는 곳에 OO후보자와 □□후보자가 있습니다.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
<b>A</b>	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.

(16)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

<b>Q</b>	저희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는데,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.
<b>A</b>	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.

(17)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

<b>Q</b>	(사전)투표소에서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·전송·공유해도 되나요?
<b>A</b>	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## II

# 교원·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

### (1)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·반대

<b>Q</b>	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·후보자를 지지(반대)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<p>『공직선거법』 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,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또한 『공직선거법』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 <p>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”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‘선거운동’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</p> <p>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.</p> <p>특히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.</p>

### (2)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

<b>Q</b>	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(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)에 OO후보자의 공약사항, 선거벽보,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,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<p>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</p> <p>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</p>

(3)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

<b>Q</b>	학생에게 수업시간에 '집에 가서 부모님께 OO후보자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려라'라고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4)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

<b>Q</b>	학생에게 '이번 선거에서 OO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'고 말해도 되는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5) (예비)후보자 업적 홍보

<b>Q</b>	학생들에게 (예비)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등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6)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

<b>Q</b>	제 친구가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'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'라고 말해도 되는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7)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

<b>Q</b>	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. OO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, 동아리 학생들에게 OO후보자의 강연회·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·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OO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될런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8)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

<b>Q</b>	제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 하셨는데,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.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, 춤이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'OO후보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해서 공연 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'라고 말해도 될런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9) 특정 정당 지지·반대 행위

<b>Q</b>	OO정당은 □□정당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공약을 많이 개발하였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□□정당의 정책, 공약을 비판하고 반대로 OO정책과 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?
<b>A</b>	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. 또한 국(공)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10) 정당 등 지지도 조사

<b>Q</b>	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(11) 투표한 정당 조사

<b>Q</b>	이번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 전에 제가 담임을 맡고있는 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·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?
<b>A</b>	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(12) 당원 가입 · 후원금 기부 권유 등

<b>Q</b>	학생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,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요?
<b>A</b>	교원이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,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·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(13)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 · 토론회 개최

<b>Q</b>	□□학교 교장입니다. 저희 학교에서는 ○○당 ○○후보자를 초청하여 ○○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·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?
<b>A</b>	학교에서 정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합니다.

### Ⅲ

## 정당·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&A

### (1)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

<b>Q</b>	후보자가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?
<b>A</b>	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### (2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①

<b>Q</b>	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 및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 할 수 있나요?
<b>A</b>	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.

### (3)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②

<b>Q</b>	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교장을 면담하고 곧이어 교무실을 방문하여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할 수 있나요?
<b>A</b>	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.

### (4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

<b>Q</b>	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?
<b>A</b>	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### (5)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

<b>Q</b>	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장장치로 지지호소할 수 있나요?
<b>A</b>	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

(6)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

<b>Q</b>	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, 후보자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 할 수 있나요?
<b>A</b>	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.